

2024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

□ 현장실습 학기제란?

○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(기관)이 공동 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,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

□ 추진 일정

구분	내용	비고
기업 참여 신청	실습기업: 운영계획서 진로취업부 홈페이지 등록 - 실습 유형(표준·자율) 구분하여 운영계획서 등록 - 실습생 선발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선발 일정 고려하여 신청	12. 31(화) 까지
	등록처: <u>http://hrd.cbnu.ac.kr</u>	
	작성 내용 확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	
참여학생 선발	기업별 선발 방식에 따라 직접 선발 또는 학과 추천 선발 - 운영계획서 등록 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접수 및 선발	1. 3(금) 까지
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	선발학생에 한해 학과 요청 접수 후 센터에서 수강신청 및 해당 사업단 별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- LINC3.0, 국립대육성사업: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가입 - 그 외 사업(SW중심대학, RIS, 이차전지 등): 사업단에서 가입	실습 시작 3일 전까지 요청
사전 교육	실습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	별도 안내
산재보험 가입	실습기업에서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(실습 시작 후 1주일 이내, <u>intern@cbnu.ac.kr</u> 로 제출)	기업→학교
협약 체결	실습기업·실습학생·대학 3자간 협약 체결	
현장실습 실시	`24. 12. 26 ~ `25. 2. 28. 중 실제 출근일 기준 20일 이상 운영	
수행 점검	학생 및 기업 실습현황 점검(대면·비대면 병행 운영)	
실습 종료	실습 종료 및 실습기업 담당자의 평가서 작성·제출	

□ 모집 개요

- O 실습기간: 2024. 12. 26. ~ 2025. 2. 28. 중 20일 이상
 - 25년 6월까지 장기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계획서에 방학/학기 연계과정에 체크
 - 실습생이 25년 2월 졸업예정자일 경우 1. 23.(목)까지 실습 종료
- O 기업 참여신청: 2024. 12. 31.(화)까지(실습 시작 3일 전까지 학생 선발)
- O 실습 유형: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
- O 실습 장소: 실습 참여기업 내

- O 접수 방법: http://hrd.cbnu.ac.kr 회원가입 후 운영계획서 등록
- O 운영 형태: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으로 운영
- O 실습기관
 -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·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·실습이 가능한 기관
 -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 관련 업무를 부여
 - 학생의 교육·지도 및 관리를 전담할 교육담당자 배치
 -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(미가입시 현장실습 불인정)

불인정 기준

- ①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선발하는 경우
- ②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- ③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(일경험 수련생 포함)
- ④ 4대보험 체납, 노사분규 및 상습 임금체불 등으로 실습이 불가한 사업장
- ⑤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,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 - 소비, 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
 - 계절적,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
 -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(단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센터, 연구소 등은 가능)
 - O 산재보험 가입
 - 산재보험: 실습기업에서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 * 미가입 시 불인정
 - 실습 시작 후 1주일 이내에 기업에서 학교로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
 - 발급 방법: 고용-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내 "증명원 신청/발급-고용 산재보험 사업자취득명부신청"에서 사업자 번호 기입
 - ※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되는 경우 (건설)현장별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

🔲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

- O 운영 기간 및 시간
 - <u>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</u>으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운영
 -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이거나,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
 - 단 자율 현장실습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와 사전 협의
- O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
 -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(실습 수행계획, 안전, 보안 등),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,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실습기간 중 10% ~ 25%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함

○ 실습지워비

-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2022-1호)에 의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
- 주 또는 월 단위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및 직무 교육시가 비율에 따라 산출

현장실습 유형	최소 실습지원비(25년 최저임금 기준 75%금액)		
ਟਰਵਜ਼ ਜਰ	주 단위 지급 금액	월 단위 지급 금액	
표준 현장실습	361,080원 이상	1,572,203원 이상	

※ 지급 단위(주 또는 월)는 실습기업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름

산출 방법

- 주 단위 실습시간 수: 일 실습시간 수 x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
- ·주 단위 실습지원비: 시간급 최저임금액×주 단위 실습시간 수×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
- •월 단위 실습시간 수: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×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- ·월 단위 실습지원비: 시간급 최저임금액×월 단위 실습시간 수×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

- < 산출 예시(2025 기준)>
 1일 8시간, 주5일, 교육시간 25%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/ 25년 최저임금 10,030원 기준
 주 단위로 지급 할 경우 실습시간 수 및 실습지원비 = 48시간/ 361,080원 이상
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
 ⇒ (8시간 × 5일 + 8시간) = 48시간
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) = 4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× 5일 + 8시간 □ (8시간 × 5일 + 8시간 ×
- ⇒ (8시간 × 5일 + 8시간) = 48시간 (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 ⇒ 48시간 × 0.75 × 10,030원 = 361,080원/주 월 단위로 지급 할 경우 실습시간 수 및 실습지원비 = 209시간/ 1,572,203원 이상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⇒ [(8 × 5 + 8) ÷ 7] × (365 ÷ 12) = 208.57 ≒ 209시간 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 ⇒ 209시간 × 0.75 × 10,030원 = 1,572,203원/월

(참고)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

- 제22조(실습지원비)
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 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.
 제25조(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)
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.
- ※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O 실습 중 학생 지도 및 점검

- 현장실습 지도 담당자(지도교수)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의 현장 교육 현황 등을 청취하고, 현장실습 보고서의 작성 지도 및 점검, 출근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지도 실시(실습기간 중 1회 이상)

O 학생평가 및 학점부여

-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습학생의 수행능력· 수행태도 및 출결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에 제출
-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해 검토 후 평가(P/F)

□ 학교 지원사항

- 실습기관: 학생 실습지원비를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(100%)*으로 지급하는 경우, 실습 종료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실습 기관에 최저임금의 25%금액 지원 가능 *25년: 2,096,270원
 - ※ 단 실습학생 소속 학과 및 지원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
 - ※ 회계마감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O 실습학생: 상해보험 가입 및 실습 유형에 따른 학점 부여(별도 지원금 없음)

□ 재택 현장실습

- <u>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류 제</u> 출을 통해 해당 학기 전체 **실습기간의 25%기간에 한정**하여 실시
- 단, 실습기간의 25% 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실습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여권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, ②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 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, ③ 학생·실습기관·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

☐ 제출 서류

제출자	서류목록		
실습기관	실습 전	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, 사전 서면점검서(신규기업 해당)	
	실습 중	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(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→증명원신청/발급→고용산재보험 사업자취득명부신청에서 사업자번호 기입 후 발급)	
	실습 후	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, 설문조사	

☐ 담당자 연락처

○ 현장실습지원센터 ☎ 043)261-3557/3547, intern@cbnu.ac.kr